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87

발의연월일: 2024. 9. 10.

발 의 자:이상식·조계원·이정문

이언주 • 이병진 • 양부남

이소영 • 민병덕 • 백승아

부승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「새마을금고법」 제20조에 의거 임기 4 년에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12년간 이사장 지 위를 유지하다가 후임 이사장의 임기만료 후 선거에 출마하다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장기집권하는 사례가 다수임.

또한, 현행법에서는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을 보고,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, 이를 이용하여 임기만료 2년 이전에 퇴임 후 2년간 임원으로 근무 후에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사례가 새마을금고 조직 내에서 정례화되어가고 있음.

이러한 문제로 새마을금고가 사금고화되고 있으며, 직장 내 갑질, 채용 비리, 성추행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이사장의 선출방식은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하고, 임기는 4년으로 하면서 2차례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함으로 써 최대한 12년간만 재직할 수 있도록 하며, 퇴임한 이사장은 임원으 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5항 단서, 제20조제3항, 제21조제1항제18호). 법률 제 호
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5항 단서 중 "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,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법"을 "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또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"으로 한다.

제20조제3항 전단 중 "연임할"을 "중임할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연임한"을 "중임한"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퇴임한 이사장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이 법 시행 당시 2차례 연속하여 연임한 이사장의 임기는 그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차례 중임 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임원의 선임 등) ① ~ ④	제18조(임원의 선임 등) ① ~ ④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⑤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회원	5
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	
출한다. 다만, 자산이 일정 규	
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금고의 이사장은 회	<u>ই</u>]
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	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
법,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또	법 또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
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	<u>법</u>
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	
택하여 선출할 수 있다.	<u>.</u>
⑥ ~ ① (생 략)	⑥ ~ ①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임원의 임기) ① • ②	제20조(임원의 임기) ① • 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	③
연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	<u>중임할</u>
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	
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	
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,	
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	
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	
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	

연임한 것으로 본다.
제21조(임원의 결격 사유) ① 다 저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수 없다. 다만, 제18조제3항에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~ 17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18.</u>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

<u>중임한</u>
제21조(임원의 결격 사유) ① -
1. ~ 17. (현행과 같음)
<u>18. 퇴임한 이사장</u>
<u>19.</u> (현행 제18호와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